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340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2
2.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정부안)	5
3.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정부안)	11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340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직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만 몰수·추징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사 명의 등을 빌린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알선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까지 몰수·추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2조의7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정부안, 정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신설>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제7조의2) ○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00), 정태호의원안 2024. 10. 18. 발의(의안번호 4771)

☐ 개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세무사법」¹⁾에 따르면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

1) 「세무사법」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징직(停職)된 사람으로서 그 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0.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등록의 취소)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

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한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하고, 추후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이러한 세무사의 등록, 등록취소 업무는 법 제20조의3²⁾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 사항은 경찰청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왔음.

그런데, 경찰청은 세무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조회가 곤란하다는 입장임³⁾.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⁴⁾에서 범죄경력조회는

소한다.

2.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세무사법」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법률 제2358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 제6080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법률 제6837호 稅務士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경찰청은 2020년 8월 세무사회에 대하여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목적상의 지도점검 등을 위하여 전체 세무사에 대한 범죄경력을 일괄적으로 조회·회보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 개인의 인격권, 개인정보 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범죄경력 조회·회보 불가 회신”(2020. 8. 10. 시행)].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범죄 수사 또는 재판, 형의 집행, 공무원 및 군인의 임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개정안은 세무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유사입법례로, 「공인회계사법」⁵⁾, 「관세사법」⁶⁾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근거를 법률에 두고있음.

5)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2005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제40조의2제1호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관세사법」 [법률 제18722호, 2022. 1. 6., 일부개정]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관세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정부안)

현행	개정안
<신설>	☐ 세무사 등 광고의 기준(제12조의7) ○ 세무사·세무법인(이하 “세무사등”)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 등에 광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금지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입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00)

☐ 개정안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하 “세무사등”)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해서만 금지⁷⁾하고 있을 뿐, 세무사 등이 자기 또는 그 사원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광고의 기준에 대하여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⁸⁾에 따라 제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세무사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최근 세무 플랫폼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플랫폼을 활용한 과도한 환급금 제시, 경력 부풀리기 등 과대·과장 광고를 통해 납세자를 현혹하여 세무대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입질서를 훼손하고, 이에 따른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⁹⁾이 제기됨.

7)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한국세무사회 의견임

□ 이에 개정안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 사유¹⁰⁾에 해당하게 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등록취소,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세무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수입 질서를 확립하고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유사입법례인 「변호사법」, 「변리사법」에서도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각각 변호사와 변리사의 광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광고 금지 유형(① 거짓 광고, ②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의 표방, ③ 과장 광고, ④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광고, ⑤ 다른 세무사등 비방·비교 광고, ⑥ 품위 훼손 광고 등)은 두 법의 입법례와 개정안에서 대동소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10)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광고 기준에 관한 유사 입법례와 개정안 비교]

변호사법(현행)	변리사법(현행)	세무사법 개정안
제23조(광고)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8조의5(광고) ② 변리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리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리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리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제12조의7(광고)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서는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에 대하여는 징계 외에도 형벌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형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는데,

‘거짓 내용의 광고’와 ‘법적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광고’는 ‘허위(虛僞)’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서 다른 ‘과장(誇張) 또는 부당(不當)’한 광고 유형과는 구분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사입법례와 같이 벌칙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 벌칙]

변호사법(현행)	변리사법(현행)	세무사법 개정안
제1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제24조(벌칙) ③ 제8조의 5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없음)

둘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무사등이 광고 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라는 점, 하위법령(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세무사 외 현행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세무자문사의 경우에도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광고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음.

3.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몰수·추징(제25조) ○ 아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함. 다만,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 - 명의 등을 빌려준 자 - <신 설> - <신 설>	☐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명의 등을 빌린 자 -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

* 정부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00)

☐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취득한 금품,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의 대상에 현행 ‘명의 등을 빌려준 자’에 더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법¹¹⁾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명의대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몰수·추징은 범죄행위의 수단이 된 재산 자체의 박탈을 통한 재범의 예방 목적과 함께,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 취득을 원천봉쇄함으

11) 「세무사법」

제25조(몰수·추징) 제12조의3(제16조의16제1항 및 제19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명의 등을 빌려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로써 범죄의 유인동기가 되는 경제적 이익을 단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제도로서¹²⁾,

특히, 경제적 수익이 주된 범죄 동기가 되는 경우 그 수익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행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몰수·추징은 「형법」 제48조¹³⁾를 적용할 수 있으나, 동 규정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몰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적 몰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에 현행 ‘명의 등을 빌려준 자’에 더하여 ‘명의 등을 빌린 자’와 ‘명의 등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① 명의대여 행위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명의를 빌린 자’도 ‘명의를 빌려준 자’와 불법성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특히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의 경우 위법성이 보다 클 수 있다는 점, ③ 명의대여 쌍방 및 알선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됨.

12) 국회입법조사처,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의 현황 및 입법과제」, 2017. 12. 29.

13)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유사입법례로, 「변리사법」 14)에서도 개정안과 같이 명의 대여자, 명의를 대여 받은자, 명의 대여 알선자에 대하여 몰수·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법」 15)에서는 명의 대여자와 명의를 빌린자 쌍방에 대하여 몰수·추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14) 「변리사법」

제8조의3(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변리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8조의3(제6조의11 또는 제6조의2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제26조의2(몰수·추징) 제23조 및 제2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15) 「법무사법」

제72조(등록증 대여 등) ①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법무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린 사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제47조 또는 제47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